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 의무화〉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8호)

2024. 9.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기상 · 이건태 · 이기현 · 박상혁 · 박 정 · 서영석
김한규 · 박희승 · 임미애 · 백승아 · 김성환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 의안번호 : 337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 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 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법상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데,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전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아야 하나,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³⁾

이에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의 취지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경과나 조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⁴⁾ 본회의가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하기 전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통해 조사위원회의 활동경과나 조사상황을 들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중간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⁵⁾을 고려하면, 국회의 최종적 의사결정 기구인 본회의 역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755

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되는데,⁶⁾ 현재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는 경우 진행되는 조사위원회 위원장⁷⁾의 제안설명이 사실상 중간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제안설명 시 조사위원회의 활동경과나 조사상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활동경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표-2]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 예시

<국회회의록_21대_제401회국회(임시회)_제5차_국회본회의_2023. 1. 6.>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우상호 지금부터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이 순연됨에 따라 유가족·생존자·상인·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처
02)6788-5016

6) 「국회법」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7) 「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